

1. 개정 이유

소방장비의 안정적 지원과 이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,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·도는 교부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토록 한 한시적 조항(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제26328호, '15. 6.22.)을 2024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(안 부칙 제26328호, 제2조 개정)

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%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는 특례조항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의견조회(2023. 11. 30. ~ 12. 11.) 중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4. ~ 12. 11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26328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“2023년”을 “2024년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) 시·도는 제10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<u>2023년</u> 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(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.	제2조(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) ----- ----- -- <u>2024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